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주택, 주택이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납부기한 : 10. 1.(월) 까지

- 2018년 9월분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9. 30.(일)이므로 10. 1.(월)까지 납부가능합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 10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1.2%의 증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단,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 : 주택(1/2), 토지

- ※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 전자고지나 자동이체(신용카드, 계좌)를 신청하시면 혜택을 드립니다.

종이고지서(정기분)를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아보시고 납기내 납부시 500원의 마일리지 (고지서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 1,000원)를 적립해 드리며,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여 납기내 납부 시에는 세액에 관계없이 500원의 마일리지와 함께 추가로 500원의 세금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 신청 : 서울시ETAX시스템(etax.seoul.kr), 구청 세무부서

☞ 자동이체 신청 : 서울시ETAX시스템(etax.seoul.kr), 주거래은행방문, 인터넷지로, 거래은행인터넷뱅킹

2018. 9.



서울중구

재산세 !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1.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 이용납부

■ 은행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지방세”를 선택하신 후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납부

▶ 본인 세금납부 : “본인납부”선택

▶ 타인 세금납부 : “전자납부번호”선택 후 고지서에 기재 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 단,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수수료(900원) 발생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2. 전용(가상)계좌 이용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K뱅크)로 은행창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등을 이용하여 납부

<전용계좌>

우 리	_____
신 한	_____
KEB하나	_____
국 민	_____
기 업	_____
우 체 국	_____
씨 티	_____
농 협	_____
수 협	_____
카카오뱅크	_____
K 뱅크	_____

3. 지방세 인터넷 납부

■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조회납부’에서 회원인 경우 회원납부 선택, 비회원 또는 타인명의 세금 납부시 ‘납세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후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PAY, 위비페이,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 앱카드)로 납부

<납세번호>

납세번호	기관 번호	세 목
	납세 연월기	과세 번호

4. 스마트폰 이용 납부

■ 스마트폰으로 「앱스토어,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STAX” 조회·설치 후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PAY, 위비페이,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 앱카드)로 납부

5. ARS 이용 납부

■ ARS 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